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	전	2010나2012 구상금
원고, 피항소인		□□□□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○○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○○
피고, 항소인		나○○ (49년생, 여자) 수원시 권선구 송달장소 수원시 권선구
제 1 심 판 결		수원지방법원 2009. 12. 3. 선고 2008가소208759 판결
변 론 종 결		2010. 6. 16.
판 결 선 고		2010. 7. 14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,87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7. 11. 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□□□노인복지회관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7. 2. 27.부터 2008. 2. 27.까지로 하여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, 피고는 □□□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회원이다.

나. 피고는 2007. 9. 1. 08:30경 수원시 권선구 □□동 □□□노인복지회관 내 수영장에서 입수시 전방을 잘 살펴 타인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반대방향에서 수영중인 피해자 곽○○과 부딪쳤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다. 이 사건 사고 당시 □□□노인복지회관 수영장 강사 유○○은 가드실에 있었고, 수영장 내에서 질서요원 내지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.

라. 원고는 2007. 10. 29.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곽○○에게 보험금

4,100,000원을 지급하고, 광○○과 사이에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의 이해관계자에
게 더 이상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, 2007.
11. 7. 광○○에게 4,1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5, 6호증, 을 제7, 15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
의 의사 김○○(한양치과의원장)에 대한 2009. 4. 13. 2009. 9. 11.자 각 사실조회 결
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[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] 을 제5호증의 1, 2, 3, 제6호증의 1, 2, 3, 제8, 9, 11,
12, 13호증, 제14호증의 1, 2의 각 기재

2. 구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

가. 구상책임의 발생

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사고는 □□□노인복지회관의 안전조치·질
서유지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□□□
노인복지회관 및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.

따라서, 피고는 □□□노인복지회관을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손해를 배상해준
원고에게 상법상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중 피고의 부담부
분에 한하여 이를 구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.

나. 구상책임의 범위

나아가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.

(1) 먼저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펴건대, □□□노인복지회관과 피고 사이의
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□□□노인복지회관과 피고의 각 과실비율에 상응
하는 손해를 분담하여, 어느 일방이 자신의 출재로 상대방을 공동면책시킨 때에는 상

대방에 대하여 그 면책을 위하여 출제한 금원 및 기타 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,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, 안전조치·질서유지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□□□노인복지회관의 과실 내용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한 피고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70%로 봄이 상당하다.

(2) 다음으로,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광○○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1호증의 기재, 제7호증의 1 내지 4, 제10호증의 1 내지 5, 제11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의사 김○○(한양치과의원장)에 대한 2009. 4. 13. 2009. 9. 11.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광○○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광○○의 치료비 1,036,480원, 향후 치료비 2,850,000원, 28일 가량의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등 기타 손해 140,000원 합계 4,026,480원(=1,036,480원+2,850,000원+140,000원)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.

또한, 광○○이 의치를 착용한 채 수영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, 광○○과 □□□노인복지회관 및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비율은 90 : 1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, 광○○의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면, 3,623,832원(=4,026,480원×0.9)이 된다.

여기에, 이 사건 사고의 경위, 광○○의 과실비율, 광○○의 건강상태 등 제방사정을 참작하면, 광○○의 위자료를 476,16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, 결국 □□□노인복지회관 및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광○○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

4,100,000원(=3,623,832원+476,168원)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

(3)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4,100,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,870,000원(=4,100,000원×0.7)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면책일 다음날인 2007. 11. 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. 8. 2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,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

 판사 정혜원 _____

 판사 김유성 _____